



제420회국회(임시회)
제2차환경노동위원회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경미한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 입력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신설〉

■ 김위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690호)

2025. 1.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경미한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 입력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신설	2
※ 참고자료	6

I. 제안경위

2024년 10월 15일 김위상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10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불법폐기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등의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하고 있으며,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를 입력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음.

현행 폐기물관리법에서는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를 기간 내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입력하는 등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그 처분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하여 과도한 형벌규정이 적용됨으로써 폐기물처리업의 정상적 수행에 어려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이에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를 기간 내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형벌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68조제3항).

Ⅲ. 검토의견

1. 경미한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 입력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신설

개정안은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기간 내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경우 등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68조제3항제4호의3).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8조(과태료) ①·② (생략)	제68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 -----.
1. ~ 4의2. (생략)	1. ~ 4의2. (현행과 같음)
4의3.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u>내용을</u> 기간 내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자	4의3. ----- ----- <u>사항 또는</u> <u>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u> ----- ----- ----
5. ~ 14. (생략)	5. ~ 14. (현행과 같음)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에게 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등의 폐기물처리 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하고(제18조제3항¹⁾),

이를 위반한 경우 허가 취소·영업정지(제27조제2항제3호²⁾), 조치명령(제48조제1항제5호³⁾),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제66조제4의4⁴⁾).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는 불법투기 예방을 위하여 폐기물 배출·운반·처리 전 과정의 현장정보를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2019년 개정된 동법에 따라 2020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전송 대상 현장정보는 다음 표와 같음.

-
- 1) 「폐기물관리법」 제18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③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이하 “폐기물처리현장정보”라 한다)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폐기물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 2) 「폐기물관리법」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3.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한 경우
 - 3) 「폐기물관리법」 제48조(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등) 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부적정처리폐기물(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거나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버려지거나 매립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발생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치명령대상자”라 한다)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5. 부적정처리폐기물과 관련하여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 4) 「폐기물관리법」 제6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4의4.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현장정보 종류]

전송의무자	전송할 현장정보	전송장치 종류	설치위치	설치수량
수집·운반하는 자	위치정보	차량용 GPS 단말기	차량 운전석	차량별 1대
처분 또는 재활용 하는 자	영상정보	영상정보처리기기 (CCTV)	진입로	진입로별 1대
	영상정보, 계량값		보관장소	1대 이상
	-		계량시설*	계량시설별 1대
		자동전송단말기(PC)	사무실	1대

* 계량시설 설치의무 비대상자는 계량값과 계량시설 영상정보 대신 계량증명서(사본)를 제출

자료 : 환경부

한편, 전송대상 현장정보의 전송주기는 정보 항목에 따라 계량 즉시부터 영업일 기준 1일 2회까지 달라지는데, 이에 따라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관리시스템’에 전송되는 현장정보는 1일 평균 수백 건이 전송된다는 점에서, 시스템 오류, 기입 오류 등 경미한 위법행위가 발생할 여지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시스템 오류, 단순 누락 및 기입 오류 등에 의한 경미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현행법상 제재인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취지로 보임.

또한, 인계·인수서 입력의무의 경우 위반 경중에 따라 동법 제66조 제4호의4에 따른 징역·벌금 및 동법 제68조제3항제4호의3에 따른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개정안도 이와 유사하게 규정함으로써 처벌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환경부 및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는
위반행위 경중에 따른 제재규정 신설을 통하여 업체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판단되는바, 개정안을 수용하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46

※ 참고자료 1: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 개요

□ 현황

- 사업장폐기물 배출·운반·처리자는 폐기물 인계인수사항을 작성·제출하고 있으나, 사용자가 직접 수기로 입력하고 있어 관리에 한계
- 이에, 불법투기 예방을 위해 배출·운반·처리 전 과정의 현장정보를 모니터링하는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를 도입·시행*

* 시행일 : 건설폐기물('22.10) → 지정폐기물('23.10) → 사업장일반폐기물/수출입('24.10)

<현장정보 종류>

전송의무자	전송할 현장정보	전송장치 종류	설치위치	설치수량
수집·운반하는 자	위치정보	차량용 GPS 단말기	차량 운전석	차량별 1대
처분 또는 재활용 하는 자	영상정보	영상정보처리기기 (CCTV)	진입로	진입로별 1대
	영상정보, 계량값		보관장소	1대 이상
		-	자동전송단말기(PC)	사무실
			사무실	1대

* 계량시설 설치의무 비대상자는 계량값과 계량시설 영상정보 대신 계량증명서(사본)를 제출

□ 추진경과

- (시스템 구축) 지능형 폐기물 안전처리 관리체계 구축('19.7~'22.1, 148억원)
 - * '22년부터 한국환경공단인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관리시스템'으로 운영('24년 31억원)
- (도입·시행)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 도입(폐관법 제18조제3항, '19.11.26. 개정 '20.5.27. 시행), 현장정보 종류·시행일** 확정(시행규칙 제20조제2항, '22.1.7)
 - * 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 '22.10.1.(건설) → '23.10.1.(지정) → '24.10.1.(사업장일반)
 - 전송장치 종류와 규격, 전송주기 등 세부사항을 고시*로 제정('22.6.9)
 - 건설폐기물* 및 지정 폐기물 대상 현장정보 전송제도 시행('23.10.1)
 - * 시행 초기 제도 안착 등을 위해 12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하여 '23.10.1. 본격 시행
 - 사업장일반폐기물 대상 현장정보 전송제도 시행('24.10.1)
- (기술지원) 제도소개 및 이행방법 안내, 프로그램 설치와 장애조치 등 지원을 위한 고객센터·현장기술지원반 운영(환경공단)

※ 참고자료 2: 현장정보 전송장치 및 전송주기

① 차량용 단말기

구 분		전용단말기형 (펌웨어형)		프로그램설치형 (SW구동형)	이동통신단말기 (어플)
		고정형	탈부착형	탈부착형	탈부착형
배출자	운반차량	○	○	○	○
수집·운반업, 처분업, 재활용업	전용차량	○	X	X	X
	임시차량	○	○	○	△*
제품 예시					

*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의 임시차량만 사용 가능

② CCTV 및 자동전송단말기(PC)

구 분	CCTV			계량값 (인디게이터)	자동전송 단말기
	진입로	계량시설	보관시설		
설치 예시					

③ 현장정보 전송주기

항목		기록주기	전송주기
위치정보		10초 * 1초 ~ 30초 사이에서 변경 가능	60초 * 1초 ~ 60초 사이에서 변경 가능
	계량값	폐기물을 계량할 때마다	폐기물을 계량한 즉시
	계량증명서*	폐기물을 반입할 때마다	폐기물을 인수한 후 2일 이내
영상 정보	진입로	차량이 진입할 때마다	영업일 기준 1일 2회 (12시, 18시)
	계량시설	폐기물을 계량할 때마다	계량값 측정 시점부터 1분 이내
	보관장소	영업시간 기준 1시간마다	영업일 기준 1일 2회 (12시, 18시)

* 폐기물관리법상 계량시설 설치의무가 없는 처리업자는 공인계량소 등을 이용하여 증명서 발급